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영등급 분류 기준에 흡연·욕설 등 유해표현
고려사항 추가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6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영등급 분류 기준에 흡연·육설 등 유해표현 고려사항 추가 등 (안 제29조제7항제7호,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의 상영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TT에서는 흡연·육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사례공유 등의 부족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흡연·육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9조제7항제7호 및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상영등급 분류 기준에 흡연·욕설 등 유해표현 고려사항 추가 등 (안 제29조제7항제7호,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흡연·음주·욕설·비속어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29조제7항제7호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등급분류책임자가 자체 등급분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⑥ (생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흡연·음주·욕설·비속어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u>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 사항)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류한 등급분류의 적절성에 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u>등급분류책임자는</u>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3. ----- ----- --- <u>등급분류책임자는</u> <u>자체적으로</u> <u>등급분류를 한 사례를 공유하며</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u>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u>제50조의4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u> ----- -----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 책임자에 대한 <u>온라인 교육시스템</u> 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4. ----- ----- <u>자체 등급분류 사</u> <u>례 공유, 온라인 교육시스템과</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9조 및 제50조¹⁾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③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④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현행법 제50조의2 등²⁾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³⁾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의 경우 흡연·욕설 등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2의2. 제66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2026.5.12. 시행예정)
- 2의3.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2026.5.12. 시행예정)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어가 상영등급 분류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사례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흡연·욕설 등 표현 요소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자체 분류한 등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 사례의 공유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상영등급 분류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4)에 따라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5)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명시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5)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제5조(등급분류 고려요소)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 요소 간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주제 : 전체적인 구성, 사건 전개, 배경, 맥락 등이 해당 연령층의 정서, 가치관 및 인격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정도
2. 선정성 : 신체 부위 노출, 애무와 정사장면, 성적 도구 등이 포함된 성적 표현
3. 폭력성 : 신체·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해 및 살상, 유혈, 신체 훼손 등을 일으키는 물리적 폭력,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학대를 초래하는 심리적 폭력, 성폭력 등이 포함된 표현
4. 대사 :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
5. 공포 : 상황 또는 매개체에 의해 발생하는 긴장감, 불안감, 정신적 충격 등의 표현
6.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의 표현
7. 모방위험 : 자살·자해,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범죄 기술 등 특정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모방심리를 고무, 자극하는 표현

하고 있는 흡연·음주·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언어는 현재도 등급분류 시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흡연·욕설 등 특정 표현 요소를 법률 조문에 직접 열거하는 것은, 이미 하위법령과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서 세부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 단계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례 공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제도 운영과 중복되거나 조문 해석에 따라 등급 확정 이전 단계에서의 의무적 절차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취지와 사업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재사유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등급분류 사례 공유”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식회사 티빙, 콘텐츠웨이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신속한 콘텐츠 유통과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 적절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체 등급분류 사례공유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및 재지정 심사 체계와 중복되어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6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위원회 (26. 1. 14.)	○ (등급분류 기준 개선관련 중복 입법여부 검토 필요)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영화비디오법 시행령」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분류기준),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세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에서 등급분류 기준의 미비점으로 제시된 ‘흡연·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 등급분류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으며, 현행 법률과 하위규정을 통해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흡연’, ‘욕설’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세부 고려요소 중 ‘약물’, ‘대사’ 요소에서 각각 판단하고 있음 ○ (자체등급분류 결과 적절성 강화 관련) -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수렴은 그 해석에 따라 등급 확정 이전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신속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등 과잉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개정안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준수사항에 자체등급분류 결과 사례를 공유토록 한 것은 이미 현행 자체등급분류류책임자 법정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입법 실익이 없으며, 현행 법률과 제도운영을 통해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협회명/사업자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26. 1. 14.)	○ 등급분류 기준 개선 관련 - 이미 OTT를 통해 공개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있어 흡연, 음주, 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언어를 모두 고려하고 있음 - 또한, 법체계의 규율 안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데에 더해 정교한 청소년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음 * 프로필별 연령등급 설정, 비밀번호 설정 등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견수렴 의무 추가 관련 -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취지인 신속성과 시장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규제 역행임 - 등급분류 이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후 허가제와 다름없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도입 취지인 신속성과 시장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부정 - 의견수렴과 사례공유를 법률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법적 의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
티빙 (26. 1. 16.)	○ 등급분류 기준 개선 관련 - 과도한 상향 입법으로 법체계를 훼손하고 산업 내 혼란 유발 - 흡연·욕설 등은 이미 등급분류 기준 7개 고려요소 항목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견수렴 의무 추가 관련 -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며 영등위는 사후관리로서 보완하는 구조 - 의견수렴 및 사례공유는 운영 효율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규제하여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님 ➔ 법률 개정이 아닌 영등위 가이드라인/교육/권고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할 경우 형식적 회의, 보고 중심의 행정 부담 증가, 실질적 등급분류 품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 * 실제 본 제도의 관할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기적인 자체등급 사업자 집체교육을 통해 의견수렴 및 사례 공유를 진행하고 있어, 이미 본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협회명/사업자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콘텐츠웨이브 (26. 1. 16.)	○ 등급분류 기준 개선 관련 - 현행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7항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하고 있는 6개 등급분류 기준은 사회문화적 보편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체계 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견수렴 의무 추가 관련 - 등급분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및 사례 공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의견수렴 절차를 사업자 자율이 아닌 법률과 시행령 상에 명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음 -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함께 매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법률상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버스컴퍼니 (26. 1. 16.)	○ 등급분류 기준 개선 관련 -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 및 행위(흡연, 욕설 등)를 등급분류 시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수용 가능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견수렴 의무 추가 관련 - 당사는 전체 콘텐츠의 90% 이상이 '전체관람가'이며, 등급분류와 관련한 쟁점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음에도 동일하게 '의견수렴'과 '사례 공유'를 의무적으로 명문화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 행정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콘텐츠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용이나 자율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26. 1. 19.)	○ 등급분류 기준 개선 관련 - '흡연·욕설 등'은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7항에 이미 포함되는 요소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등급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영등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견수렴 의무 추가 관련 - 자체등급분류 의견수렴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영등위 개선권고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서비스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하거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의견수렴 방식을 강제하는 문제만을 야기 - 등급분류 책임자 의견수렴과 관련 하여서도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 영화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⑥ (생략)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⑧ ~ ⑩ (생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비디오물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 ~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⑦ (생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 제5호 중 “제한상영가”는 “제한관람가”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1. 전체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2.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3.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 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을 미화·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4.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다. 대사의 표현은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性的)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5. 제한상영가 기준

- 가. 주제 및 내용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나.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 다.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라.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일부 발췌)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 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 사회나 가족의 긍정적 가치나 의미 등을 알려주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
 - 나. 모든 연령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노출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자연스러운 신체의 부분노출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단, 희극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충격이 적고 짧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유혈,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가벼운 상해나 충돌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또는 학대, 고통 등의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라. 성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거의 없는 것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불쾌감을 주는 요소가 없는 것
 -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없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를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 흡연 장면이 없는 것)
 -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없거나 매우 단순히 표현된 것
 -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12세 이상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나.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2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키스, 포옹 등 애정 행위)이 경미한 수준에서 표현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가벼운 수준의 성적 농담, 은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강조되지 않고 빈도가 낮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 학대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심리적 폭력의 경우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
 -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통상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가벼운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이 간결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전체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단,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언급이나 경각심을 주는 내용 등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가. 자살, 자해 등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
 - 가.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나,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것
 - 나.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단,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 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은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 맥락상 타당하게 표현된 것(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에서의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나.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 행위는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적으로 표현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자세하지 않아야 하며 잔혹한 이미지는 드물게 표현된 것
 -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역사적 사건이나 희극적·비현실적인 내용의 경우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라.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 자극적, 지속적이지 않은 것
 - 바.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4. 대사: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의 표현이 있으나 빈번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 가.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있으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거친 욕설은 맥락에 따라 판단할 것)
 - 나. 공격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개상 수용 가능한 것
 - 다.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언어 사용이 있으나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과도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
 -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는 짧고 반복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과를 기술하여 이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은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있으나 이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 나. 가족 윤리를 훼손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
 - 2. 선정성: 선정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

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예 근친상간, 혼음,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것
-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신체,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 나. 상해, 살인, 유혈, 신체훼손, 고문 등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 다.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고통이나 가학적 위협, 학대 등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 라. 성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지속적인 것
 - 바. 폭력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대사: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욕설, 비속어, 저속어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위협감과 공포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것
 - 나. 무섭거나 충격적인 장면의 표현이 빈번하고 자세하게 표현된 것
 - 다. 공포 분위기의 음향, 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이고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것
- 6. 약물: 약물 사용이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
 - 나. 약물의 오남용,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복용, 제조·이용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과도하며, 그 표현 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 가. 자살, 자해 등의 위험한 행위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나. 범죄 수법, 무기·흉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다.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불법 행동 등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2.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 가.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또는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등)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것
 - 나. 성적 맥락에서 성기 등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 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 또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 라.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과 신체훼손 등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 마.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